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허정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5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허정행, 강희향, 문정애,
송병길,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한일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개범위(안 제4조)
- 공개방법 및 내용(안 제5조)

3.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7. 9. 15 ~ 9.19 (의견제출 없음)
- 나.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 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공공시설물” 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 나. “공공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다. “공공건축물” 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 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

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전자태그 부착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 ③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